

##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6.12.08.>, <6차 개정 2026.07.01.>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내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정의)** ①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우리 대학교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④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02.27]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원, 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그 밖에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에서 이동 2023.02.27]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 행위의 전 과정에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2023.02.27]

## 제2장 우리 대학교 및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5조(우리 대학교의 역할과 책임)** ① 우리 대학교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우리 대학교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 및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 우리 대학교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④ 우리 대학교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⑤ 우리 대학교는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⑥ 우리 대학교는 소속 연구원이 다른 기관에서 재직하던 기간 중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거나 그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⑦ 우리 대학교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함에 있어 관련 연구 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협조한다. <신설 2018.10.05, 개정 2021.12.20>

[제4조에서 이동 2023.02.27][제목개정 2023.02.27]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 부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연구활동 및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인식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3.02.27>

③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본 규정에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02.27>

④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02.27>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신설 2023.02.27>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신설 2023.02.27>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신설 2023.02.27>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신설 2023.02.27>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신설 2023.02.27>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신설 2023.02.27>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신설 2023.02.27>
  8. 연구결과물 발표시 연구자의 소속 및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신설 2023.02.27>
  9.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신설 2023.02.27>
  10. 지속적인 연구윤리 교육의 참여 <신설 2023.02.27>
  11.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금지 <신설 2023.02.27>
  12.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신설 2023.02.27>
  13.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단, 특수관계인은 관계기관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3.02.27>
    - 가. 연구 시작 전 : 특수관계인의 참여 계획을 소속 기관 및 공동 연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02.27>
    - 나. 연구 수행 중 :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차명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3.02.27>
    - 다. 공저논문 발표 전 : 소속 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3.02.27>
  - ⑤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실에서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원들이 우리 대학교의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연구실 폐기물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23.02.27>
- [제5조에서 이동 2023.02.27]

**제7조(연구자 권익보호)** ①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보장하며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권 보호, 권익향상 및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성별, 나이, 종교, 출신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들에게 공정하게 연구성과 및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④ 대학은 연구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위력행사 및 그 밖에 권익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하여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02.27]

### 제3장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제8조(연구자의 건전한 학술활동)** ① 연구자는 연구성과물의 가치보호 및 윤리적 학술교류를 위해 건전한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 등을 통해 연구성과물을 발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의 건전한 학술활동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는 정보 제공 등 제1항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2.27]

**제9조(연구결과의 발표)** ①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1.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 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연구부정행위를 발견 및 부실학술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3.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3.02.27]

### 제4장 인간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 생성형 AI 활용 등에 관한 윤리

**제10조(인간대상 연구의 윤리)** ① 연구자가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우리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승인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02.27]

**제11조(동물실험대상 연구의 윤리)** ① 연구자가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과학적·윤리적 이용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동물 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전에 우리 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의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승인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02.27]

**제11조의2(생성형 AI 활용의 윤리)** 연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구에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대학교 「생성형 AI 활용 및 연구자산 외부 유출 방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7.01]

## 제5장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제12조(이해충돌의 범위)** ① ‘이해충돌’이란 연구자가 공적업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 금전적 이해충돌: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이 연구 등 본연의 임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인적 이해충돌: 연구자의 개인적 친분이나 갈등 등 사적인 인간관계가 연구수행, 평가,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경우
3. 직무의 이해충돌: 연구자로서의 연구활동 등 고유 직무 외 역할(자문, 창업, 봉사, 외부활동 등)수행이 연구자로서의 고유 임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지적 이해충돌: 특정 연구분야나 이론적 확신,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 등으로 인해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심사, 평가 등에 편향이 유발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02.27]

**제13조(이해충돌의 관리 및 보고)**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 대학, 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될 때는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 밖에 제12조에 규정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우리 대학교에 보고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④ 연구자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 수행 전 또는 공저 논문의 발표나 투고 전에 이를 우리 대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창업을 하려는 전임교원은 학생을 직원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하며, 교수로서 학생을 독립적 연구자로 발전시킬 책무가 있다. 또한 교수로서의 기본 의무인 교육 및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외부활동이나 연구수주를 피하여야 한다.

⑥ 우리 대학교는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여 연구자가 연구활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자가 보고한 이해충돌 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3.02.27]

## 제6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제14조(설치)** 연구 부정 및 부적절 행위를 예방하며, 그 행위 발생시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우리 대학교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상설위원회로 둔다.

<개정 2023.02.27>

[제6조에서 이동 2023.02.27]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02.27>

1. 연구윤리 및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 및 명예 회복에 관한 사항
6. 연구윤리교육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3.02.27>

[제7조에서 이동 2023.02.27]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캠퍼스별로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02.27>

②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02.27>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02.27>

[제8조에서 이동 2023.02.27]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02.27>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02.27]

## 제7장 연구부정행위 범위 및 판단

**제18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해당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10조에서 이동 2023.02.27]

**제19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개정 2023.02.27>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11조에서 이동 2023.02.27]

## 제8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제20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정 2023.02.27>

② 제보자는 우리 대학교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27>

③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2.27>

④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27>

⑤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3.02.27>

[제12조에서 이동 2023.02.27]

**제21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우리 대학교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0>

② 우리 대학교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02.27>

④ 피조사자는 우리 대학교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13조에서 이동 2023.02.27]

**제22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연구지원부서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가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연구지원부서 또는 해당 대학원이 연구부정행위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위한 주관부서가 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02.27]

**제2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에 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12.20>

②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으며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④ 총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보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02.27]

**제24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④ 총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

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02.27]

**제25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비조사는 연구지원부서 또는 해당 대학원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5인 이내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02.27>

③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및 연구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예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자의 내용이 제18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2023.02.27, 2024.11.05>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⑥ 예비조사의 결과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0, 2023.02.27>

⑦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0>

1. 제보내용 <신설 2021.12.20>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신설 2021.12.20>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신설 2021.12.20>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신설 2021.12.20>

[제17조에서 이동 2023.02.27]

**제26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총장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제19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02.27]

**제27조(본조사위원회 구성)** ①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2.27>

② 제1항의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27>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19조에서 이동 2023.02.27][제목개정 2023.02.27]

**제28조(본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본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02.27>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총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3.02.27>

③ 제보자는 동일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개정 2023.02.27>

④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02.27>

[제20조에서 이동 2023.02.27][제목개정 2023.02.27]

**제29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27>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및 연구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02.27>

③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02.27>

[제21조에서 이동 2023.02.27][제목개정 2023.02.27]

**제30조(본조사 결과보고)** ① 본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결과 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3.02.27>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본조사위원 명단 <개정 2023.02.27>
  3.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개정 2023.02.27>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 <개정 2023.02.27>
  6. 조사결과 <개정 2023.02.27>
- [제22조에서 이동 2023.02.27]

**제31조(판정)** ①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승인하여 총장에게 보고·확정하고 이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23.02.27>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02.27>

[제23조에서 이동 2023.02.27]

**제32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3.02.27]

## 제9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제33조(조사결과에 대한 통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본 규정에서 정한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비 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2.27]

**제34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02.27>

1. 징계조치 <신설 2023.02.27>
  2.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및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보 <신설 2023.02.27>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 <신설 2023.02.27>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27>
-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2023.02.27>
1. 우리 대학교 구성원인 경우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여 징계를 요청 <신설 2023.02.27>
  2. 우리 대학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신설 2023.02.27>
- [제26조에서 이동 2023.02.27]

**제35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지원부서 또는 해당 대학원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결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2023.02.27]

**제36조(비밀엄수)**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02.27>

[제28조에서 이동 2023.02.27]

## 제10장 일반부정행위 관리

**제37조(일반부정행위의 범위)** 일반부정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 이라함) 제3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다음 각호의 일체의 건전한 연구활동 위반행위를 말한다.

#### 4-1-28 연구윤리 규정

1.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2.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3.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 [본조신설 2023.02.27]

**제38조(일반부정행위의 검증)** 일반부정행위 검증은 사안의 특성과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며,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다만 부정행위가 둘 이상의 소관부서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처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2.27]

### 제11장 연구윤리 교육

**제39조(연구윤리 교육)** ①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윤리를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연구윤리 강사진 확보,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연구자는 본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대학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2.27]

### 제12장 기 타

**제4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훈령 제15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3.02.27>

[제29조에서 이동 2023.02.27]

####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